



의안번호	제34호
------	------

논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 출 자	서 원 의원 외 5명
제출연월일	2021. 04. 01.

논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제34호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04. 01.

대표발의자 : 서 원

공동발의자 : 조용훈 김남충
최정숙 김만중
이계천

1. 제안이유

이 조례는 논산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정의 (안 제2조)
- 나.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(안 제4조)
- 다. 청년기업 지원 사업 (안 제5조)
- 라. 청년기업 인증 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「청년기본법」 제18조
- 나. 입법예고 : 2021. 4. 1. ~ 4. 5.(5일간)

□ 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논산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청년기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.

1. 논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소재할 것
2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
3.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

제3조(시장의 책무) 논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논산시 청년기업 육성 계획(이하 “육성 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
2.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
3.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청년기업 지원 사업)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“지원 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,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
2.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
3.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청년기업 인증) 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 기업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 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.

제7조(인증 절차)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.

제8조(인증서의 발급 등) ① 시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,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9조(인증 취소) 시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부도·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
2. 대표 변경,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
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

제10조(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)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구매촉진 지원)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.

제12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과 「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소 관 부 서	성 명
입 안 자	논산시의회 의원	서 원 의원 외 5인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「청년기본법」

제18조(청년 창업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,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